

의안번호	제 339 호
의결년월일	1996. 2. 29.

의결
사항

원안
가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고성군의회 대일본 규탄결의 (안)

발의자	김 행정의원 외 4 인
발의년월일	1996. 2. 27.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고성군의회 대일본 규탄결의(안)

의안 번호	339
----------	-----

발의년월일 : 1996. 2. 27.

발의자 : 김행정의원 외 4명

1. 주 문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공개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총리 및 외상의 망언에 대해 일본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을 모독한 죄를 공개사과케 하고 더이상 시대적 과오와 파렴치한 망언을 하지 못하도록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 국민에 선포하고 관계기관에 강력 대응토록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독도는 역사적으로 볼때 서기 512년 신라의 이사부장군이 정복한 우산국 즉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영유권에 대하여 하등의 분쟁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우리 영토임이 삼국사기·고려사를 비롯한 각종 사료에서도 입증되고 있음.
- 1900년 고종황제 칙령 제41호로 울릉군의 부속도서로서 강원도에 편입시키기도 했으며 현재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3리 산67번지가 현주소임.
- 1978년 일본 해군성 수로국 발행 지도원본에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일본 명치정부의 최고 국가기관인 대정관의 결정문, 1869년 일본 외무부보고서등 일본측 사료에도 독도가 한국영토임이 여러곳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1945년 2차 대전 항복문서에도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

- 또한 미국 지리학회 발행 세계표준지도에도 독도는 한국영토로 명기되어 있고 러시아, 중국, 독일을 비롯한 국제세계에서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시사하는 등 일본의 억지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음.
- 이렇게 볼때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영토인 독도를 제멋대로 자기땅 운운하는 것은 영토당토 않는 망언에 불과하며 일본의 제국주의적 영토확장 야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이므로 우리 영토와 주권수호를 위하여 대일본 구탄 결의문을 채택 우리 정부와 일본 대사관에 전달코자 하는 것임.

※ 붙임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고성군의회 대일본 구탄결의문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고성군의회 대일본 규탄 결의문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공개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총리 및 외상의 망언에 대해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더이상 시대과오적인 파렴치한 망언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고성군의회는 7만 군민의 분노와 규탄의 뜻을 같이 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독도가 역사상·국제법상 우리의 영토로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데 대해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앞에 엄숙히 사과하라.
2.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위한 계산된 발언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일본의 간교한 술수를 강력히 규탄한다.
3.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에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4.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하여 차후 이같은 불미한 사안이 또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처 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 7만 고성군민과 고성군의회는 이런 정부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각오임을 밝힌다.

1996. 2. 29.

고 성 군 의 회 의 원 일 동